

## ●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407호

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‘행정절차법’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3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, 부동산개발업 등록관청(시·도지사)이 등록사업자가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에게 실적 보고시 관련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사업실적 내용에 자금조달현황 작성란 신설 (별지 제13호 서식)
- 나. 실적보고 작성방법 중 일부사항 상세 규정 및 일부 용어 변경 등 (별지 제13호 서식)

#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부동산개발산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
(전화 044-201-3454, 3445, 팩스 : 044-201-5661)

#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) 「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」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(044-201-3454, 344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